

의안번호	2210240
의 퇴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5.5.16.
추계번호	25B26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9억원, 2030년 171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802억원(연평균 160억원)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49	155	161	167	171	802	160

주: 1. 추계금액은 경장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출산 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배우자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 이상이 되어야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출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공식추계(제1항)
		—	• 미대상(제4항) –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8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6조²⁾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추가 지급기간과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2024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장래 출생아 수에 적용하여 산출

[표 2] 출생아 수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A)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0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비율(C=B/A×100)	6.9%	7.0%	6.5%	6.9%	7.7%

주: 2024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2024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7.7%)을 적용하여 산출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A, 천명)	229	239	248	257	26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A \times 7.7\%$, 명)	17,529	18,295	18,983	19,672	20,13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다태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2023년 기준 다태아 출산률(5.5%)³⁾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17,529	18,295	18,983	19,672	20,132
- 다태아($B=A \times 5.5\%$)	964	1,006	1,044	1,082	1,107
- 단태아($C=A \times 94.5\%$)	16,565	17,288	17,939	18,590	19,02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지급기간) 개정안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차이
 - 다태아: 20일(현행 20일 → 개정안 40일)
 - 단태아: 10일(현행 20일 → 개정안 30일)
 - (지급단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5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⁴⁾」를 토대로 산출
 - 본 추계서는 2025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607,650원/20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산출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9억원, 2030년 171억원으로 추계됨

3) 자료: 통계청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표 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17,529	18,295	18,983	19,672	20,132
- 다태아(A, 명)		964	1,006	1,044	1,082	1,107
- 단태아(B, 명)		16,565	17,288	17,939	18,590	19,024
추가지급기간	다태아(C, 일)	20	20	20	20	20
	단태아(D, 일)	10	10	10	10	10
지급단가(F, 원)		80,383	80,383	80,383	80,383	80,383
추가재정소요	다태아($G=A \times C \times F$)	15	16	17	17	18
	단태아($H=B \times D \times F$)	133	139	144	149	153
	소계($I=G+H$)	149	155	161	167	17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의 비중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